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. 6. 22 선고 2018가단120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고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

피고A

변론 종결2018. 6. 8.

판결 선고2018. 6. 22.

주 문

1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6. 4. 22. 접수 제255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, 피고의 B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

완성을 원인으로 B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김종근

별지